

□ 산중총회법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산중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50일 내지 30일이 달한 때 2.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3.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 4.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<p>② 산중총회는 교구본사 주지가 소집하며,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는 제4조 제3항의 대행순서에 따라 소집한다. 다만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③ 산중총회는 개회일 전 20일까지 중단기관지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산중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<u><항 신설></u></p>	<p>제5조 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법계, 승납,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,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